폐기물 감량목표제 본격시행

환경부, 200톤이상 배출사업장 대상 … 통산부, 청정기술 개발 지원

제품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생산공정 개선과 기술개발 촉진을 겨냥한 폐기물 감량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95년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고 개정법의 경과조치기간이 완료된 2월5일부터 개정폐기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우선 사업장 폐기물감량목표제를 도입,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14개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코커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래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이다.
반면 서비스업, 수산업, 광업, 식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제지, 피혁 등의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9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710억원을 투입,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청정생산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의 공정개선과 설비개체에 대한 청정생산설비자금의 확충 및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9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5년간 3단계 청정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총 4710억원을 투입, 업종별 청정생산기술과 청정기반기술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95년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기술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및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청정생산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시책과 관련해서는 96년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오염방지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자금으로 2400억원을 지원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통산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품질인증제, 공제사업 등을 종합연계하고 환경산업협의회, 업종별 사업자단체, 청정기술학회, 전문연구소 등과 산·학·연 종합 연계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족한 기술력 보완을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도 화대해 선진구과의 공동기술개발, 전문인력 교류, 세미나 개최 및 정보망 연결 등을 추진하고 중국 및 동남아 등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화학저널 1996/3/4>